

CONTACT



변호사 김운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



변호사 이은우

T: 02.772.4334
E: eunwoo.lee@leeko.com



변호사 맹정환

T: 02.772.4986
E: justin.maeng@leeko.com



변호사곽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



변호사 박찬우

T: 02.2191.3244
E: chanwoo.park@leeko.com

ChatGPT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이슈 및 시사점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언어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¹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언어모델 챗봇)입니다. 2022년 출시된 ChatGPT는 다양하고 방대한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기존의 AI보다 언어 패턴과 구조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특징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ChatGPT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 업무에 있어서도 간단한 계약서 작성을 넘어 소송문서 작성, 특허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등에 ChatGPT를 활용하는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AI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나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ChatGPT에 대해서도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의 데이터 마이닝 방안, 답변의 저작물 인정 여부, 답변 활용시 유의사항과 같은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hatGPT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의 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률 이슈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방법을 통해 웹페이지들에서 텍스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웹 스크래핑/크롤링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부,²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³ 등이

¹ 지난 3월 14일 GPT 시리즈의 4번째 모델인 GPT-4가 출시되었습니다.

²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복제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저작권법 제16조, 제20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인 데이터베이스를 상당 부분 복제하여 수집하는 행위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제93조).

³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동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잡코리아 v. 사람인HR 사건, 리그베다위키 v. 엔하위키 미러 사건, 아놀자 v. 여기어때 사건 등 웹 스크래핑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안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무단사용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ChatGPT가 웹 스크래핑의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 체계적으로 상당 부분 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⁴ 특히 최근에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로봇배제 표준(robotstxt)에서 웹사이트의 로봇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학습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2. 4. 20.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혹은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본 목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hatGPT의 답변 관련 법률 이슈

■ ChatGPT 답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ChatGPT는 AI 언어 모델이므로 노래 가사, 소설, 시, SNS 게시물, 광고 문구 등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 ChatGPT의 답변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아직까지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창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AI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2. 2. 14. AI가 창작한 미술저작물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 거절결정을 한 바 있고, AI 프로그램을 발명자로 하여 각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다부스(DABUS)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사람이 아닌 AI가 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ChatGPT 답변과 같은 AI 창작물이 점차 많아지고 권리 보호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에 인간의 창의적 노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2016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AI 창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세웠고, EU는 2017년 AI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저작권 보호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ChatGPT의 답변 활용시 유의사항

ChatGPT는 다양한 텍스트 정보를 학습하고 이에 기반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생성해내는 ChatGPT의 답변이 기존의 어문저작물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ChatGPT의 답변을 복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AI 언어 모델인 ChatGPT는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표절에 해당하지 않도록 창작물을 생성해 낼 수는 있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수는

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최근에 시행된 것으로서 아직 명확한 판결이나 해석례가 존재하지 않으나,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일반적·보충적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아닌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인 (카)목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없고,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고 표방하고 있는바⁵ ChatGPT 답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복제, 배포 또는 상업적인 이용시에는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⁵ ChatGPT의 답변입니다.

3. 시사점

ChatGPT 열풍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를 불문하고 ChatGPT의 도입 및 활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개정 및 법원의 입장이 확립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만, ChatGPT를 포함한 AI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AI 기술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입법 동향 및 법원의 입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